

성 남 신 촌 공 공 주 택 지 구
전 락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19.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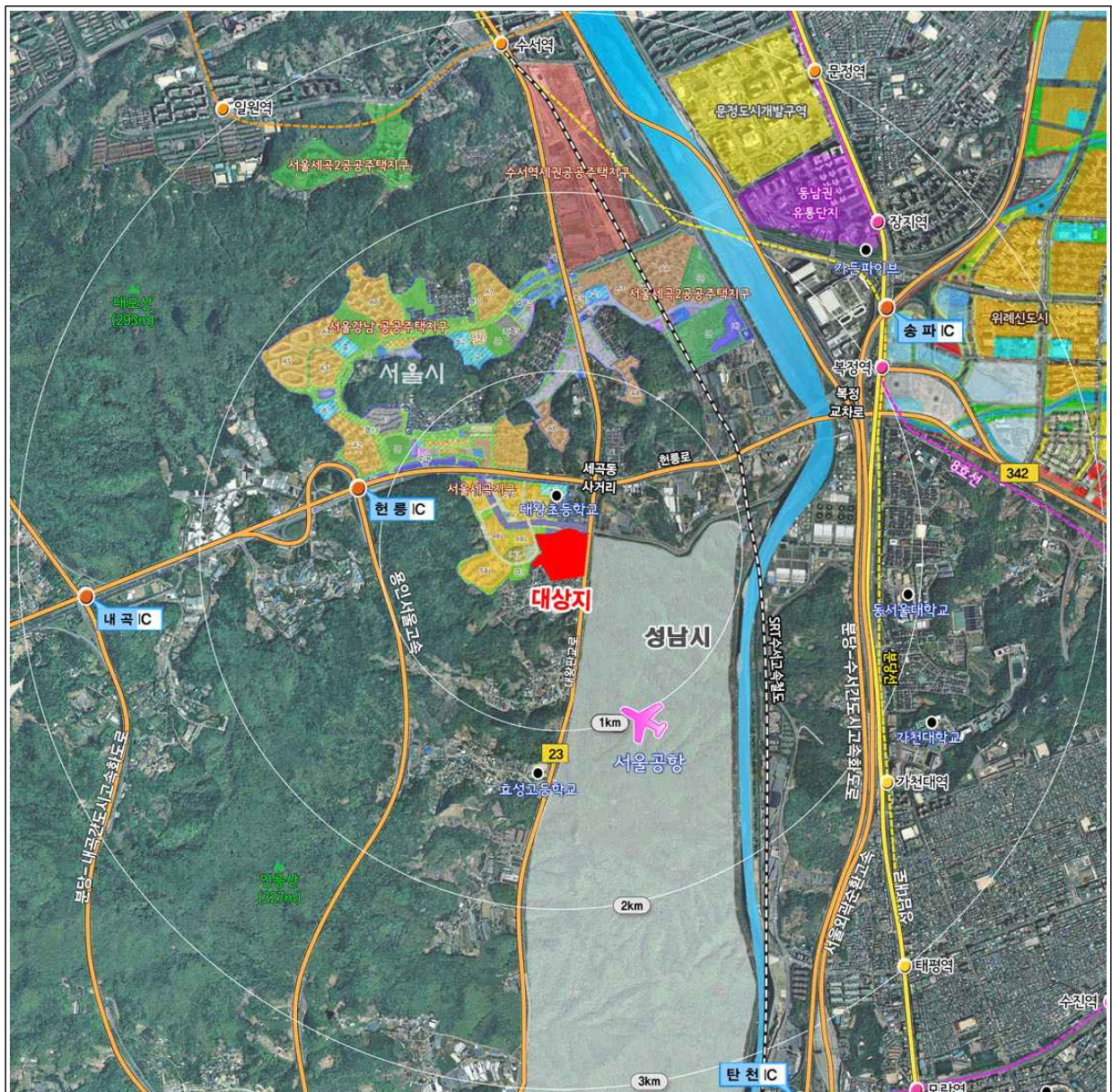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 계획의 개요

- 가. 계 획 명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 나. 계획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
- 다. 계획면적 : 68,391㎡
- 라. 사업기간 : 2018년 ~ 2024년
- 마. 계획수립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바.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그림 1) 계획지구 위치도

2. 주민 등 의견수렴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함

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가. 공고일자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4호(2019년 01월 18일)
- 중앙일간지 : 서울신문(2019년 01월 18일)
- 지방일간지 : 경인일보(2019년 01월 18일)

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년 01월 21일 ~ 2019년 02월 21일
- 공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신촌동 주민센터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환경과,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

다.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19. 02. 28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라. 공개 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마. 공람 결과

- 제출된 주민의견 제출서 : 총 51건(총 51명)
(2.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참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4호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
- 계획규모 : 68,391㎡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년 1월 21일(월) ~ 2019년 2월 21일(목)(21일간, 토요일·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성남시 신촌동 주민센터,
서울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환경과,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에 비치)

3.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19년 1월 29일(화), 오전 10시
- 개최장소 : 성남시 신촌동 주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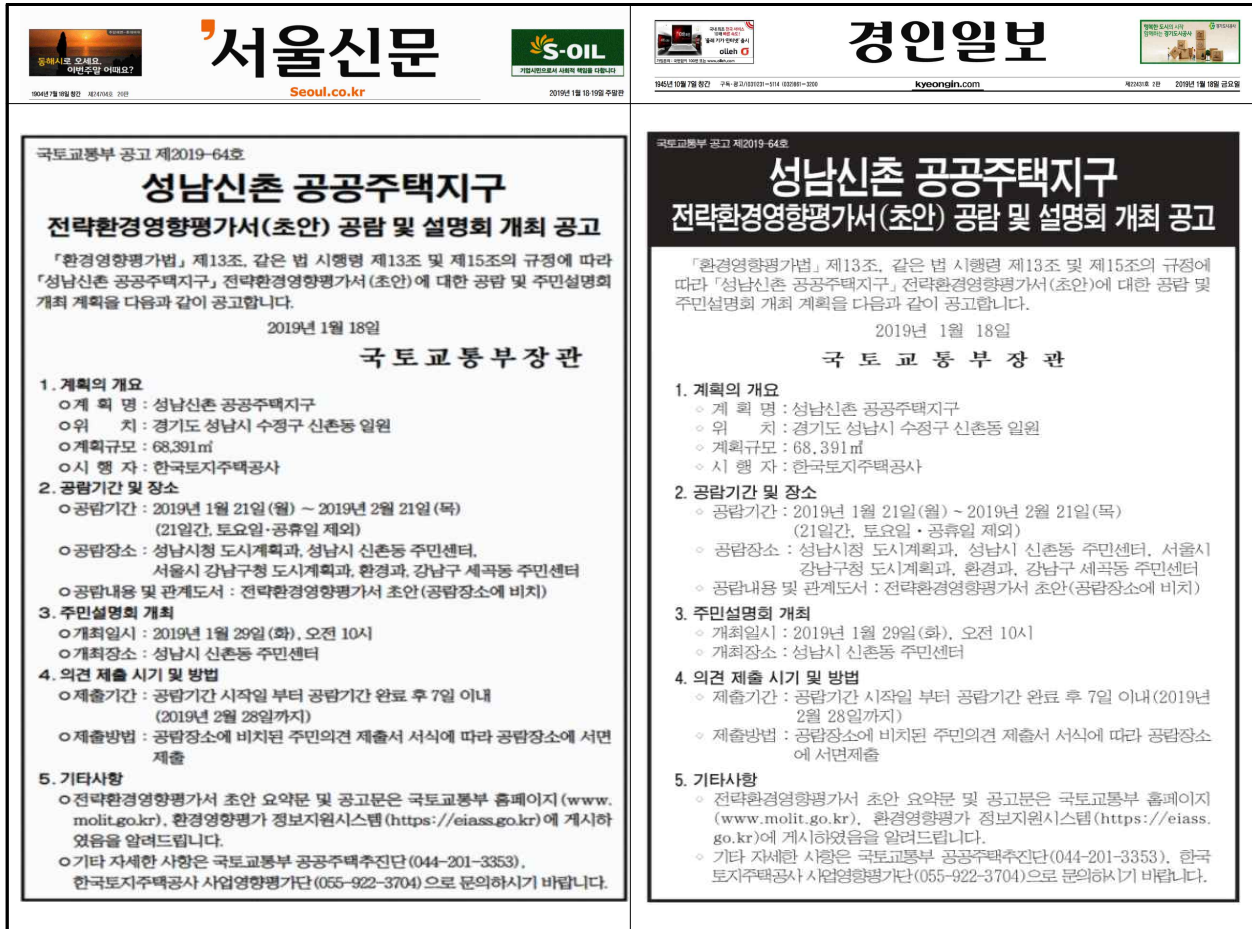
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일 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19년 2월 28일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서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5. 기타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335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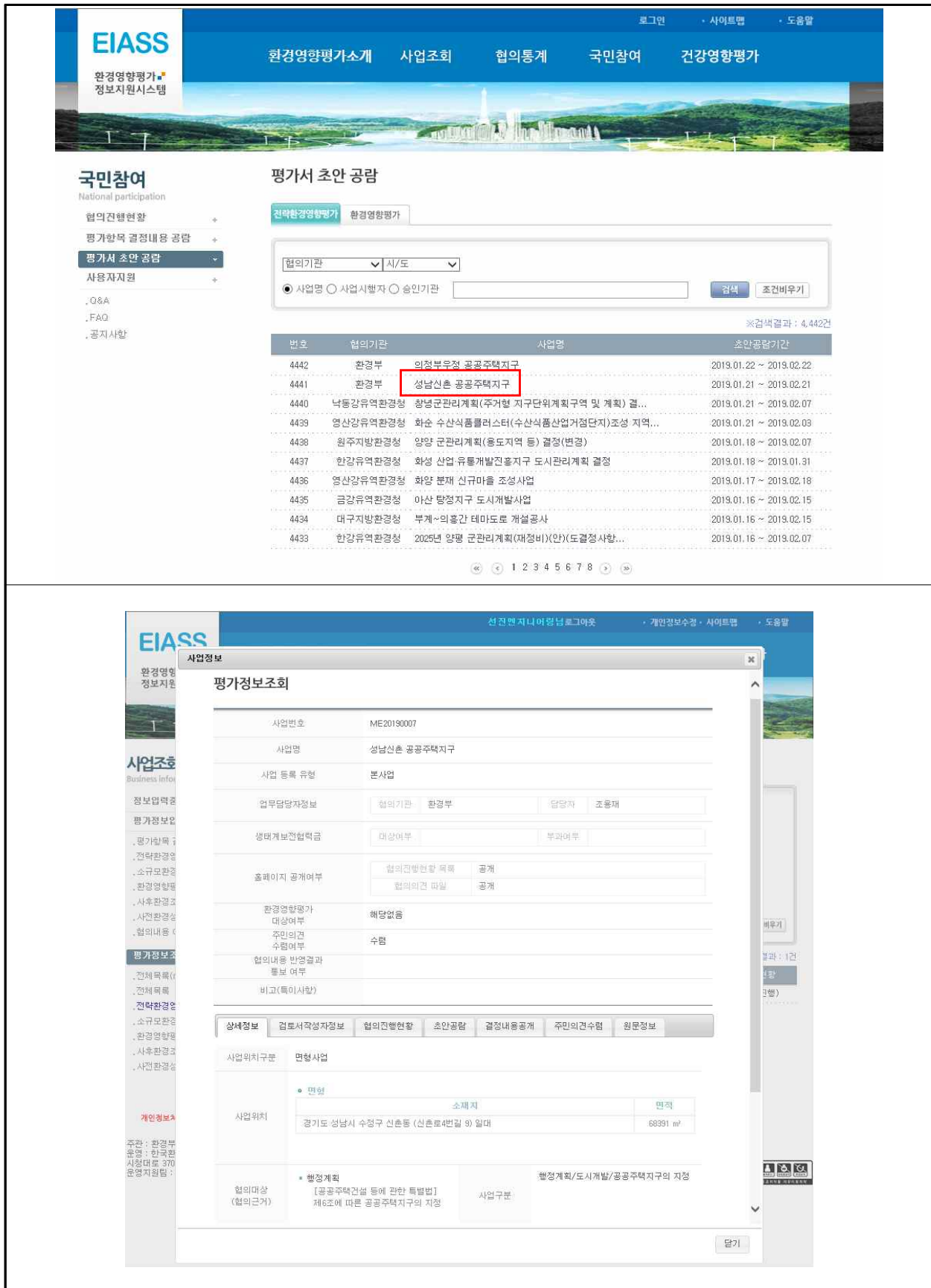
(그림 2) 공고문



(그림 3) 신문광고



(그림 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게재



(그림 5)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개재

2.2 주민설명회

가.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에 포함하여 공고

나. 주민설명회 개최장소 및 일시

구 분	장 소	일 시	비 고
주민설명회	경기도 성남시 신촌동 행정복지센터	2019. 01. 29 (10 : 00)	

다.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 주민들의 설명청취 거부로 주민설명회 무산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Korea Ministry of Land,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www.molit.go.kr). The page displays a notice titled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Notice of Omission of Resident Explanation Meeting for the Seongnam Shincheon Public Housing Project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raft). The notice states that due to the refusal of residents to attend the meeting, the meeting is being omitted. It also mentions the date of the notice (2019.01.18) and the date of the meeting (2019.01.29). The notice is signed by the Minister of Land,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그림 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게재

주민의견 수렴 결과	
게시기간	2019.02.01~2019.02.21
내용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공지여부	예
자료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주민설명회 자료.pdf 주민설명회_생략_공고문.pdf

(그림 7)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2019년 3월 18일 2019년 03월 18일 09:00 000-722-0114



joongbo.com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139호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4호(2019.01.18)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
 - 계획규모 : 68,391㎡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2. 무산된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1월 29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성남시 신촌동 주민센터
- 3. 주민설명회 생략 사유**
 -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설명청취 거부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함.
- 4. 설명자료 열람방법 및 기타사항**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자료를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성남시 신촌동 주민센터, 서울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환경과,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였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하였으니 주민들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335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139호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4호(2019.01.18)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
 - 계획규모 : 68,391㎡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2. 무산된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1월 29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성남시 신촌동 주민센터
- 3. 주민설명회 생략 사유**
 -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설명청취 거부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함.
- 4. 설명자료 열람방법 및 기타사항**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자료를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성남시 신촌동 주민센터, 서울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환경과,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였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하였으니 주민들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3353),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055-922-37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8) 신문공고

2.3 공청회

가. 공고일자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75호(2019년 03월 12일)
- 일간신문 : 한국일보(2019년 03월 12일)
- 지역신문 : 중부일보(2019년 03월 12일)

나. 공청회 개최장소 및 일시

구 분	장 소	일 시	비 고
공 청 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 대회의실(1층)	2019. 04. 03 (14 : 00)	

다. 개최 결과

- 정상진행(2.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참조)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Korea Ministry of Land,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국토교통부). The page is titled '알림마당' (Notice Board) and features a sidebar with various categories like '인사발령' (Personnel Appointment), '일자리정보' (Job Information), etc.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public notice titled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Seongnam Shincheon Public Housing Zon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raft) Public Hearing Announcement). The notice is dated 2019-03-12 and includes details about the project, the responsible agency (국토교통부), and the date of the public hearing (2019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 보다나온 정부 [검색길잡이](#) [어린이 청소년마당](#) [ENGLISH](#)
분양가상한제 | 주택도시기금 | 읍버스 | 행복주택 | 토지이용규제

정보공개 국민마당 국토교통뉴스 알림마당 정보마당 정책마당 기관소개 전체메뉴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추진단 담당자 손창호 전화번호 044-201-3353 등록일 2019-03-12 조회 152

첨부파일 1 성남신촌_공공주택지구_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_공청회_개최_공고.hwp (12Kbyte)

첨부파일 2 [서식_2의2]_의견진술자_추천서_(2)(1).hwp (11Kbyte)

공고 제2019-275호

국토교통부 공고 2019-275호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신촌 공공(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그림 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게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75호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
- 계획규모 : 68,391㎡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4월 3일(수), 오후 2시
- 장 소 : 성남시 수정구청 대회의실

3. 기타사항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2019년 3월 27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fax 044-201-5659)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335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54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0) 공고문

한국일보

조세저항·충선 탓?... 카드공제 축소 또 없던 일로

중부일보

The Multimedia News Daily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75호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
 - 계획규모 : 68,391㎡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4월 3일(수), 오후 2시
 - 장 소 : 성남시 수정구청 대회의실(1층)
3. 기타사항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2019년 3월 27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fax 044-201-5659)으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335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54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75호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
 - 계획규모 : 68,391㎡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4월 3일(수), 오후 2시
 - 장 소 : 성남시 수정구청 대회의실(1층)
3. 기타사항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2019년 3월 27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fax 044-201-5659)으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335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54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1) 신문공고



(그림 12) 공청회 전경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참석자 명단 사 업 명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사 업 장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 사 업 시 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설 명 회 장 소 성남시 수정구청 대회의실 일 시 2019. 04. 03(수) 오후 2시 일련 번호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서 명 1 장 김민준 23 010-822-3892 김민준 2 장 김민준 010-822-3892 김민준 3 장 김민준 010-822-3892 김민준 4 장 김민준 164사드 010-822-3892 김민준 5 장 김민준 -1 010-822-3892 김민준 6 장 김민준 010-822-3892 김민준 7 장 김민준 -14 010-822-3892 김민준 8 장 김민준 110304 010-822-3892 김민준 9 장 김민준 122-3 010-822-3892 김민준 10 장 김민준 204-4 010-822-3892 김민준 11 장 김민준 179-11 010-822-3892 김민준 12 장 김민준 82 010-822-3892 김민준 13 장 김민준 010-822-3892 김민준 14 장 김민준 230-2 010-822-3892 김민준
--

(그림 13) 공청회 참석자 명단

2.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가. 주민공람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주)트리플크라운	○ 신촌동 184-7, 184-9, 184-10, 184-22, 184- 토지들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부당성 - 이 사건 각 토지들(신촌동 184-7, 184-9, 184-10, 184-22, 184-24)을 공공주택지구 지정 대상토지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신청하는 하는 대신, ① 의견제출인 ○○○, ○○○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4-31 답 84㎡ 전부와, ② 의견제출인 주식회사 트리플크라운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4-10 주유소용지 627㎡ 중 46㎡를 무상으로 기부 채납할 것을 약속함	○ 본 사업은 국가정책(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이며, 향후 보상제도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성남 신촌지구 투쟁위원회 (김*혁 등 50인)	○ 신촌지구는 2016년 뉴스테이법,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정신적·재산상 피해가 발생 - 과거 서울공항으로 인한 강제수용, 그 이후 세곡지구개발사업으로 재차 수용된 지역으로, 금회 공공주택으로 수용됨을 반대함 - 공익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정당한 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요구하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함	○ 본 사업은 국가정책(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이며, 향후 보상제도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주민의견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나. 주민공청회

의견진술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1. 송*호	○ 계획지구 동측에 위치한 성남수질복원센터로부터의 악취조사 미흡	○ 지구 경계부 정온시설들에 대해 악취조사 시행하였으며, 악취의 경우 기상조건 및 풍향, 계절별, 시간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추후 지구 계획 수립단계(소규모환경영향평가)시 추가 조사토록 할 계획임	-
	○ 서울공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영향검토 신뢰도 미흡	○ 금회 계획과 관련하여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시행한 항공기 소음영향검토 내용을 수록하였음	-
	○ 개발로 인하여 세곡천내 섭식하는 조류 및 야생동물의 먹이사슬, 섭식공간 훼손	○ 하수연계처리방안으로 세곡천으로의 오염물질 배출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하천변으로 녹지를 조성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였음	-
	○ 사업면적 대비 지하수질 조사(3개소) 샘플링 수 부족, 추가조사 필요	○ 지구지정 단계로 전반적인 지구내·외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선정·조사하였으며, 지구계획 수립 단계시 재검토하겠음	-
	○ 고등동 화약고(무기고)에 대한 위험성 조사 누락	○ 고등동의 경우 계획지구와 2km 이상 이격되어 있어 금회 평가대상 범위 외 지역임	-
	○ 환경영향평가법상 사회·경제적 환경평가 항목 누락	○ 사회경제평가 분야 중 인구 및 주거 분야에 대해 검토하였음	-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미흡에 따른 재작성 및 재공청회 요구	○ 환경영향평가 작성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협의회 및 초안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요구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 신촌지구 공항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실태조사 요구 ○ 항공기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 재검토 요구	○ 금회 계획과 관련하여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시행한 항공기 소음영향검토 내용을 수록하였음	-

평가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2. 박*준	○ 1970년대 서울공항 건설에 따라 신촌동 주민들의 토지 강제수용, 2006년 지구 북측 리엔파크 조성시 또 토지 강제수용, 이번 신촌지구를 포함한 3대에 걸친 강제수용은 반대함 ○ 서울공항으로 인한 물질적, 환경적 피해를 받아왔으며, 그에 대한 보상은 시행하지 않고 신촌동에 대한 토지강제수용을 요구하는 것은 반대함	○ 본 사업은 국가정책(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이며, 향후 보상제도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3. 전*식	○ 지구 내 편입되는 옛 주유소 부지는 문화광장 조성을 취지로 작년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건물 1동은 입주중이며, 1동은 다음 달 완공 예정인 상태에서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이루어짐. 이에 신축건물을 수용하여 철거 후 다시 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후 분양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공공주택 지구지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본 사업은 국가정책(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이며, 향후 보상제도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에 대해 지구계획 수립시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4. 이*성	○ 계획지구 북측 대왕초등학교, 리엔파크 아파트, 서울공항 등 신촌동 주변지역 개발 때 마다 토지 강제수용 됨 ○ 서울지역 주택가격 조정을 위해 신촌동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토착민의 토지를 상의 없이 강제수용함은 반대함 ○ 사유재산 침해하는 현재의 법·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공공주택 지정 철회 요망	○ 본 사업은 국가정책(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이며, 향후 보상제도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5. 김*혁	○ 사유지에 대한 보상 없이 현재까지 GB로 지정하여 행위제한을 하였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보상이 기준을 적용·반영하여야 함 ○ 토지감정평가사 사업시행자, 주민, 지자체측의 감정평가사를 각 동수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사업시행 후 발생하는 혜택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기존 토지 소유주에게도 혜택을 공유하여야 함 ○ 과거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수용 시 양도세 면제였으나, 현재 토지 수용시 텅 없이 부족한 토지가를 보상하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관련 기준의 개정 필요 ○ 상기 내용의 개선이 없이는 신촌지구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반대함	○ 본 사업은 국가정책(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이며, 향후 보상제도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제기된 의견에 대해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관련기관들에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평가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6. 광*환	○ 8차선도로(대왕판교로) 상가건물을 수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신촌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토지수용 절대 반대	○ 본 사업은 국가정책(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이며, 향후 보상제도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7. 강*영	○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토지가 강제수용 된다면 어떨 것인가 ○ 목숨과 같은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의견을 얼마나 관철할 수 있는가	○ 본 사업은 국가정책(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이며, 향후 보상제도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8. 고*호, 김*혁	○ 아파트단지로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고 판단되는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음 ○ 규모가 협소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자가 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사업성이 없음에도 목표물량 확보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음	○ 공공주택 중 규모가 협소한 편이나, 최근 분당 등과 같은 대규모 공급가용부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계획	-
9. 임*만	○ 수용 예정지에 대한 증여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며 건축물 준공하였음. 이는 1년 내 발생한 일들로 지자체는 지구지정 고시 직전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불허하는 등 수용예정지인 토지소유주에게 미리 통지하여 불필요한 세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	○ 금회 지구지정 단계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구계획 및 보상 등의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